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김달원 | 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지난 1월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청년정책의 범위가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구분된 정책 대상으로 정의한 것은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

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 기준(만 19~34세)¹⁾을 정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발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청년의 권리 보호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이뤄진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각 영역의 청년정책 수립은 청년에 대한 수혜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된다.

1) 다만 정책 여건의 다양성과 기존 법 및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청년기본법」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이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들은 개별적 사안이 아닌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이 상호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계 부처 장관, 지자체장,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의 위원들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지방 차원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청년정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들이 포함되고, 주요 시책과 재원 조달 방법이 분야별로 담겨야 한다. 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청년정책은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연도

별 사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체계에서 눈여겨볼 점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기획자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대폭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위원들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와 위촉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안)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위원회 등은 위촉직의 50% 이상, 기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원회 범위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의 통로도 확대된다. 청년정책추진단은 6월부터 100여 명의 청년참여단과 1000여 명의 온라인 청년패널 등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토론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다양한 청년 참여 체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 청

년정책 개선 방안 마련, 청년기본법 제정 지원 및 시행령 마련, 청년 소통·홍보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추진단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청년정책을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과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마련된 청년정책 추진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